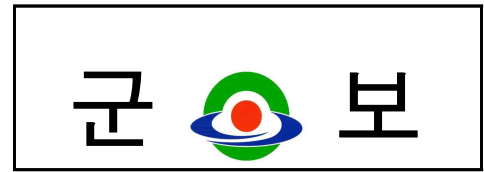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9호 2023. 6. 5.(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7호)
-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8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9호)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60호)

규 칙

- 예천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20호)

고 시

-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7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57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예천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을 준용하되,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2”

를 “영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예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장여비 지급구분을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 국내 출장여비, 숙박비 지급기준(단가) 변경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58호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수상부문)”을 “(수상대상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민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군민 중 5인 이내로 수여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상대상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의 부문마다 1명씩 수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그 공적이 다수인 또는”을 “그 공적이”로, “다수인이나 기관단체”를 “기관단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문화·체육·교육 발전과 효행, 애향, 농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예천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제5조의 제목 “(수상대상)”을 “(수상대상자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민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이에 해당될 때도 수상 대상자로 할”을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거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2. 소재지가 예천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연수가 3
년 이상인 사람

3. 등록기준지가 예천군인 사람

② 제1항의 공적은 당해연도 추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공
적에 한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된 각 부문별로”를 “따라”로 하고, “읍면장”을 실·과장·
담당관 및 소장,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포함한”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상대상 인원

제8조제1항 중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 부문별로 추천된”을 “추천된”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군의”를 “예천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2003년도 조례 제정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예천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예천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상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수상부문을 삭제하고, 수상대상자를 규정
 -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 문화·체육·교육 발전과 효행, 애향, 농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 수상대상 인원에 대한 내용 삭제

나.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수상대상자 자격요건을 규정
 -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거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 소재지가 예천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 등록기준지가 예천군인 사람

- 공적연도를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

다. 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항)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59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그 장애인과”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그 장애인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여 납세 편의도모 및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조문 명확화(안 제2조)

- 「주민등록법」 제7조

나. 문화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안 제4조, 제7조, 제9조)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 및 관련 법령 변경(안 제5조)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안 제10조)

-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 500원 ⇨ 800원
-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 1,000원 ⇨ 1,600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60호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 착한가격업소 :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가 지정한 업소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안 제4조)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름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등

라.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
-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 준수하도록 함.

예천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20호

예천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민상수상후보자”를 “예천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를 “정리하여”로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8항 중 “행정업무담당주사가”를 “행정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제5조 중 “날인 10월 16일에”를 “날 행사 때”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1. 수상후보자 성명 :

2. 추천이유 :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예천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 1. 등록기준지 :
- 2. 주 소 :
- 3. 현 직 장 :
- 4. 소 속 단 체 :
- 5. 성 명 : (한자 :)
- 6.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성별 : 남·여)
- 7. 학 력

년 월 일	학 력

8. 경 력

년 월 일	경 력

9. 포상내역

년 월 일	포 상 종 류

상기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개정이유

- 2003년도 조례 및 규칙 제정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예천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예천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민상 시상시기 개정(안 제5조)

- 군민의 날 10월 16일 → 군민의 날 행사 때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예 천 군 수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시행계획 승인)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기반 정비사업 (개간)	예천	예천	통명	산23	7,094	2015.7.20. ~ 2022.12.31.	49,040	신**
		용문	내지	56-7	414	2021.12.20. ~ 2023.12.31.	3,760	김** 외 1인